



제296회 정례회
2010.12.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1일
-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취 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기관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토 지	충청북도교육청	광혜원중고 분리이전예정 학교 용지 교환취득	99,580	3,210,110
건 물	충청북도교육청	목도고 학생기숙사 신축	1,458	2,149,180
건 물	청주교육청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810	2,029,729
토 지	청원교육청	(가칭) 오송유치원 설립용지	2,000	314,000
건 물	청원교육청	(가칭) 오송유치원사 신축	1,168	3,625,585
토 지	청주교육청	(가칭) 청심초등학교 설립용지	11,824	10,642,000
건 물	괴산중평교육청	(가칭) 오성기숙형중학교 교사 신축	11,513	20,453,513
합 계		(7건)	128,353	42,424,117

1) 광혜원중고 분리이전예정 학교용지 진천군 소유 공유재산 교환 취득

- 재산위치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외 5필지
- 교환면적 : 약 99,580㎡(30,122평)
- 추정금액 : 3,210,110천원
- 교환방법 :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면적을 가감하여 교환
- 사 유 :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요구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2) 목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사업기간 : 2011 ~ 2012
- 증축위치 :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
- 규모및예산 : 1,458㎡ / 2,149,180천원
- 사 유 : 학생 기숙사 신축(60명 정원)

3)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 사업기간 : 2011 ~ 2012
- 증축위치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 / 창신초 병설유치원 증축
- 규 모 : 810㎡ / 6학급 121명 수용 (2012. 3. 1.자 개원예정)
- 소요예산 : 2,029,729천원
- 사 유 :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유치원사 증축

4) (가칭) 오송유치원사 신축

- 사업기간 : 2011 ~ 2012
- 신축위치 :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 (가칭) 오송유치원 설립부지
- 규 모 : 부지 2,000㎡ / 건물 1,168㎡ / 6학급 122명 수용
- 소요예산 : 3,939,585천원(부지 314,000천원 / 건물 3,625,585천원)
- 사 유 : 단설유치원 설립(2012. 3. 1.자 개원예정)에 따른 유치원사 신축

5) (가칭) 청심초등학교 설립용지 취득

- 사업기간 : 2011
- 재산위치 : 청주시 사직2동 633-2 / 사모 1, 2구역 재개발 예정지내
- 규모및예산 : 11,824㎡ / 10,642,000천원
- 사 유 : 사모 1, 2구역 공동주택 재개발에 따른 학교설립(2013년예정)

6) (가칭) 오성기숙형중학교 교사 신축

- 사업기간 : 2011 ~ 2013
- 재산위치 :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산19 일원
- 규 모 : 11,513㎡ / 6학급 180명 정원
- 소요예산 : 20,453,513천원
- 사 유 :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2013.3.1.자 개교예정)

나.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기관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토 지	충청북도교육청	진천생명과학고 유희 목장 부지	45,507.0	3,210,110
건 물		진천생명과학고 돈사외 3종	663.6	
합 계		(2건)	46,170.6	3,210,110

1] 유희 공유재산 교환 처분

- 재산위치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50외 6필지 / 건물 4동
- 교환재산
 - 토지 : 45,507㎡(13,765평)
 - 건물 : 663.6㎡ / 돈사외 3동
- 추정금액 : 3,210,110천원
- 교환방법 :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면적을 가감하여 교환
- 사 유 :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요구에 따른 진천생명과학고유희 목장용지 교환 처분
 - 진천군에서 동 부지 일원에 「체육시설타운」 조성예정

5. 검토의견

○ 광혜원중고 분리이전예정 학교용지 교환 취득은

- 광혜원고등학교를 중학교와 분리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고, 진천군에서 ‘진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 교환을 제의
-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진천군청 재산 진천군 광혜원 면 소재 토지 99,580㎡ 추정금액 3,210,110천원과 도교육청 재산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생명과학고 유희 목장 토지 45,507㎡ 와 건물 663.6㎡의 추정금액 3,210,110천원을 맞교환
- 지방자치단체간 유희 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조기 학교용지 확보로 학생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목도고 학생기숙사 신축은

-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에 1,458㎡ 추정금액 21억 4,918만원을 들여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
- 6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신축(2006년에 신축한 기숙사 5실은 교직원 숙소로 전용)하면, 전교생(60명 내외)중 희망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직원이 교내에 함께 있게 되어 학생들의 학업의욕 고취는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경감을 통한 교육만족도 증진에도 기여
- 또한 2013년 괴산관내 기숙형 중학교설립과 연계되어 지역인재 외부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과 (가칭) 오송유치원사 신축은

-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로 생략함.

○ (가칭) 청심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은

- 공동주택 재개발(사모 1,2구역 및 모충 1구역)에 따라 학교설립 예정지인 청주시 사직2동 633-2번지 11,824m²를 추정금액 106억 4,200만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가칭) 오성기숙형중학교 교사 신축은

- 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로 생략함.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